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6790     |
| 의 퇴 인 | 김소희 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5. 1. 6. |
| 추계번호  | 24F6189     |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출산육아지원시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

**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**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99조의14 신설<br>(출산육아지원시설 세액공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근로자의 출산·육아 지원시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면내용: 출산·육아 지원 시설 취득 및 운영에 지출하는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</li> </ul> </li> </ul>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99조의14 신설<br>(출산육아지원시설 세액공제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# 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출산육아지원시설의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99조의14 신설)
- 개정안은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시설\*의 취득 및 운영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    - \* 직장어린이집 또는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시설
  - 직장어린이집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설치 의무
    - 단독 설치가 어려울 경우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(위탁보육)하여야 함

-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1,308개로 전체 어린이집이 3년간 6.2% 감소하는데 반해 직장어린이집은 3.2% 증가
  - － 직장어린이집의 2023년 보육아동 61,570명으로 연평균 △1.7% 감소, 전체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연평균 △7.2% 감소

[표 3] 직장어린이집 현황

(단위: 개소, 명, %)

|               | 2021      | 2022      | 2023      | 연평균 증가율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전체 어린이집       | 33,246    | 30,923    | 28,954    | -6.2%   |
| － 직장어린이집      | 1,248     | 1,291     | 1,308     | 3.2%    |
| 전체 보육아동       | 1,184,716 | 1,095,450 | 1,011,813 | -7.2%   |
| －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 | 64,931    | 61,650    | 61,570    | -1.7%   |

자료: 교육부, 「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」, 각 연도

- 현재 직장어린이집 등은 설치비용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및 운영비용 법인세 또는 소득세 손금 산입
 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해당하여 토지가액을 제외하고 설치비용의 1~10%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
    - －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중소기업 10%, 중견기업 5%, 일반기업 1%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
  -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5조 및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손금 산입
-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소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직장어린이집 등 시설 취득 및 운영 지출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
- 그러나 자료의 부재로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대상이 될 직장어린이집 등의 시설 취득 및 운영 지출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,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4조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에 대한 공제금액 정보 부재
    - －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2023년 공제실적 2.1조원(법인세 2.0조원, 소득세 0.1조원)

### 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☐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세제분석2과  | 신미정 | 백경엽 |

☐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신미정 | 02-6788-4837 | mjshin@assembly.go.kr |